

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감사 -

2016. 9.

감 사 원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2012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6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관광진흥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회계·계약관리 등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야	감사초점
주요 사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사업 추진의 적정성▪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 각종 계약관리의 적정성 등

이를 위하여 2014년 이후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되, 2014년 이전이라도 2016년 7월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 포함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후 예비조사(2016. 6. 13.~17., 5일간)를

거쳐 2016.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3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시
감사를 실시하였다.

분야별 주요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① 주요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관련서류를 검토하였고, ② 기관운영 분야에서는
조직·인력운용, 예산편성·집행, 각종 계약관리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서류, 예·결산서, 성과급 지급 내역, 계약체결 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2016. 7. 13.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6.
9. 8.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현황¹⁾

□ 설립

- 정부는 관광진흥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1982. 11. 29. 「한국관광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정하고 한국관광공사를 설립

□ 조직·인력 현황(2016년 6월 말 현재)

- 조직: 4본부 15실(원·단) 48팀(센터) 9개 국내지사 31개 해외지사
-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임원	일반직					기능직	관광통역직
			소계	1급	2급	3급	4·5급		
정원(A)	605	5	560	24	76	180	280	26	14
현원(B)	591	5	551	22	75	180	274	25	10
과부족(B-A)	△14	-	△9	△2	△1	-	△6	△1	△4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4년	2015년(A)	2016년(B)	증감(B-A)
합계	4,797	4,645	3,452	△1,193
관광진흥사업(기금)	1,530	1,937	1,771	△166
관광단지 개발사업	652	295	856	561
면제점 판매사업 등 부대사업	1,919	1,344	94	△1,250
법인세 등 기타	696	1,069	731	△338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A)	2015년(B)	증감(B-A)
자산	13,385	13,952	13,453	△499
부채	3,839	4,099	3,650	△449
자본	9,546	9,853	9,803	△50
매출액	9,034	7,132	7,365	233
당기순이익	982	757	323	△434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출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회사명	설립	주요사업	자본금	'15년 손익	지분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05년	카지노사업	300	917	51
출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997년	국제회의장 운영	1,666	△7	17.4
	서남해안레저(주)	2007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450	△17	19.9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2007년	"	900	△19	1.2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관광단지 개발사업 현황

(단위: 천 m², 억 원)

구분	중문 관광단지	내장산 리조트	오시아노 관광단지	
기간	1978~2018년	2005~2017년	1991~2018년	
개발면적	3,562	1,587	5,073	
사업비	30,233	3,227	11,809	
사업시행자	한국관광공사	정읍시(공사는 위탁시행)	한국관광공사	
매각 현황	매각면적	1,422	954	835
	잔여면적	1,106	163	1,512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를 처분요구 종류별로 구분하면 [표]와 같다.

[표]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구분	계	주의	통보
건수	11	8	3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 사업 분야

- ① 한국관광공사는 우수 숙박시설 인증사업을 3개 세부사업(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별로 추진하면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24개 숙박시설을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184개 숙박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데도 인증 취소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두었으며, 인증심사 위탁용역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을 2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과도하게 제한한 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발주
- ② 한국관광공사는 주식회사 □□□□□가 “중문단지 조성계획” 상 미술관 용도로 지정된 부지에 카트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어 관광단지가 조성계획과 다르게 조성

(나) 경영관리 분야

- ① 한국관광공사는 경쟁입찰 대상인 외관개선 설계용역을 기존에 수행 중이던 케이스타일 허브 구축사업의 설계용역에 포함시키는 등 변경계약으로 변칙 처리
- ②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 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편차를 산출하면서 선택과목만이 아닌 공통과목을 포함 산출·적용함으로써 불합격 처리되어야 할 1명이 최종합격

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우수 숙박시설 추진사업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별첨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우수 숙박시설 인증사업 시행·관리 불철저
소 관 기 관 한국관광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관광공사
내 용

한국관광공사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숙박 시설 종류별로 인증브랜드 로고¹⁾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과 아울러 국내외 홍보 대행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를 지원하는 등 우수 숙박시설 지정·인증사업²⁾ (이하 “인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관리하고 있다.

[표 1] 우수 숙박시설 인증사업 현황

사업명	굿스테이사업	한옥스테이사업	코리아스테이사업
인증브랜드 로고			
사업 착수 시기	2006년도	2013년도	2011년도
인증대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인증 시설 수 ('16년 6월 말 현재)	499개	371개	300개
'16년 기금예산	7억 원	7억 원	4억 원
인증 시 지원혜택	인증브랜드 로고 사용권리 부여, 국내외 홍보 대행, 객실판매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등		

주: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1) 로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조직 등을 나타내는 상징
- 2) 위 공사는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의 경우 ‘굿스테이 지정사업’으로, 한옥체험업의 경우 ‘한옥스테이 인증사업’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코리아스테이 인증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명을 지정사업 또는 인증사업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위 공사는 [표 2]와 같이 굿스테이사업, 한옥스테이사업, 코리아스테이사업 등 3개 인증사업별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한 숙박시설에 한정하여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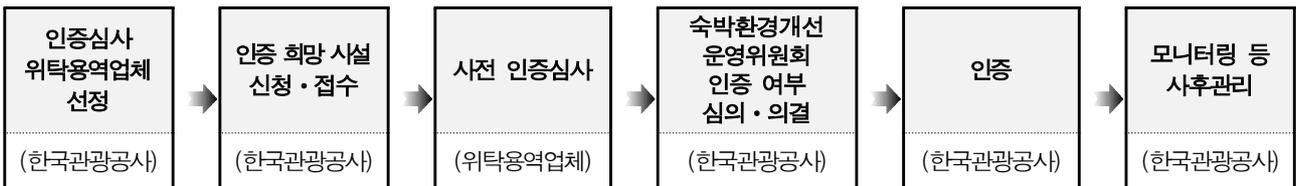
[표 2] 사업별 인증기준

구분	필수 인증기준	현장 평가 기준
굿스테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론트 등 접객공간 개방 여부 대실영업 공지 여부 객실 요금표 게시 여부 등 7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및 위생관리(50점) ▪ 건전성(25점) ▪ 고객서비스(20점) 소방안전관리(5점) 등 4개 항목(100점 만점)
한옥스테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체험업 사업자 등록 여부 업주의 범죄경력 여부 욕실 등 편의시설 여부 등 6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질성(15점) ▪ 고객서비스(15점) ▪ 시설편의성(20점) ▪ 안전성(10점) 청결도(25점) ▪ 체험프로그램(15점) 등 6개 항목(100점 만점)
코리아스테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고 여부 업주의 범죄경력 여부 업주의 실제 거주 여부 등 6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환경(15점) ▪ 청결상태(35점) ▪ 편리성(40점) ▪ 고객서비스(5점) 안전성(5점) 등 5개 항목(100점 만점)
비고	1개 항목 이상 부적합 항목 발생 시 불인증	80점 미만 시 불인증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위 3개 인증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과 같다.

[그림] 인증사업 추진체계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1. 인증심사 관련

위 공사는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로부터 ‘숙박시설별 사전 심사결과보고서’(이하 “심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인증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숙박환경개선 운영위원회’³⁾(이하 “숙박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사전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를 검토·심의하게 한 후 인증 여부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숙박환경개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호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3)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대학교수, 인증분야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하고, 담당 부서장(☉☉☉☉장)이 간사로 입회

따르면 위원회는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우수 숙박시설 인증을 위한 심의·의결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숙박시설이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숙박위원회에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에 대한 걱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인증심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2개년간 우수 숙박시설 인증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 공사의 숙박위원회 개최·운영실태를 보면 2015. 8. 19. 개최한 숙박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함은 물론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의 심사결과보고서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위원 6명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한옥스테이 인증심사 대상 383개소 중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의 사전 심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284개소이니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안건을 송부하였고 위원 모두 “찬성으로 투표한다”고 통보하자 그대로 우수 숙박시설(한옥스테이)로 인증하였다. 이와 같이 위 공사는 최근 2개년간(2015. 4. 22.~2016. 6. 9.) 총 8차례 숙박위원회⁴⁾를 개최하면서 2016. 6. 9. 개최한 숙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7차례의 숙박위원회는 위원회를 소집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8차례 모두 숙박위원회에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사전 심사결과에 대한 찬·반 여부만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숙박위원회 위원에게 요구하고 위원 모두 찬성으로 투표한 결과를 취함⁵⁾하여 그대로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하였다.

4) 위 공사는 2015년에는 6차례, 2016년의 경우 2016년 6월 말 현재까지 2차례 등 총 8차례 숙박위원회 개최

5) 위 공사는 숙박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6. 29.~7. 15.) 동안 3개 인증사업 중 굿스테이사업을 대상으로 최근 2개년간(2015~2016년)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 심사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인증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중 ■■■■■(대표자: ■■■■■)의 경우 심사항목별 현장사진을 보면 프론트가 개방되어 있지 아니하여 굿스테이사업 필수 인증기준 중 ‘관광객을 맞이하는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인 경우’(이하 “접객공간 개방항목”이라 한다)에 한정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위 공사는 숙박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대로 인증하는 등 [별표 1] “우수 숙박시설 인증 부적정 명세”와 같이 인증기준 중 접객공간 개방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24개 숙박시설⁶⁾을 숙박위원회의 심의 없이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사후관리 관련

위 공사는 매년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⁷⁾하는 등 사후관리하고 있다.

위 공사에서 우수 숙박시설 인증 시 교부하는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지정 규약」 제3조, 제8조 및 제10조, 「한옥스테이 인증 약관」 제3조, 제9조 및 제11조의 약정 등에 따르면 인증기준을 위반한 숙박시설은 특별심사 및 숙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모니터링 결과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숙박

6) 위 공사는 위 24개 숙박시설에 대하여 굿스테이 인증로고의 사용권리를 부여함은 물론, 국내외 홍보를 대행하였고, 이 중 5개 시설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515백만 원의 용자를 지원

7) 위 공사는 매년 위탁용역 방식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실시

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심사 및 숙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3개 인증사업 중 한옥스테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는 2015. 12. 15. 주식회사 ○○○○○○○(대표이사: ○○○○)로부터 “2015년 한옥스테이 서비스 모니터링 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대표자: ○○○)의 경우 체험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인증기준 하한점수인 80점에 미달(79.5점)되는 등 모니터링 대상 368개⁸⁾ 숙박시설 중 50%인 184개 숙박시설이 인증기준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대신 모니터링 대상 숙박시설 별로 모니터링 결과만을 통보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 선정 관련

위 공사는 매년 3개 인증사업에 대하여 각각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인증심사(신규 인증심사, 갱신심사⁹⁾, 특별심사¹⁰⁾)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 과도 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로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것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8) 2015년 11월 말 현재 383개 한옥스테이 인증 숙박시설 중 폐업 시설 등 15개소 제외

9) 기존 인증시설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인증기준 위반 여부를 심사

10)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인증기준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시하는 심사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굿스테이 인증심사 위탁용역의 경우 접객공간 개방항목 충족 여부, 대실 공지 여부,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 등 단순 확인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용역은 시장조사업 신고업체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라면 누구든지 수행이 가능한 용역이다.

따라서 위 공사는 인증심사 위탁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제안요청서 등에 특정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조건을 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위 공사는 2010년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시장조사업 신고업체인 주식회사 [X][X][X][X][X](대표이사: . . . , 이하 “[X][X][X][X][X]”라 한다) 및 ISO 인증업체¹¹⁾인 [X][X][X][X][X]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X][X][X][X][X]”라 한다)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 과업수행능력점수 80점+가격점수 20점)를 실시하여 과업수행능력점수가 높은¹²⁾ [X][X][X][X][X]와 용역계약(계약일자: 2010. 6. 8. 계약금액: 72백만 원)을 체결하는 등 2013년까지는 위 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일이 없었으나, 2014년 이후 발주분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인증심사 위탁용역 제안요청서”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 외에 ISO 인증업체에 인증심사를 위탁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실제적으로 해당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11) ▪ IS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관한 국제표준
▪ ISO 인증업체: 회사나 조직 등이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인증하는 업체

12) ▪ [X][X][X][X][X]: 종합점수 95점=과업수행능력 75점+가격점수 20점
▪ [X][X][X][X][X]: 종합점수 90.5점=과업수행능력 71.2점+가격점수 19.3점

그 결과 위 공사가 2014년 이후 발주한 인증심사 위탁용역에 ISO 인증업체인 **-----** 및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 등 2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업체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다.

나. 제안서 부당 평가

위 공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과 이를 구체화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마련한 위 3개 인증사업의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 선정기준’에 따르면 계약 희망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배점)가 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점수(20점 배점)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내·외부 전문가로 위촉·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¹³⁾들로 하여금 채점하도록 하는 50점 만점인 정성항목(4개 항목)과 30점 만점인 정량항목(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기술능력평가분야 평가기준

구분	세부 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성 항목	사업실행 역량 및 적합성	제안업체의 주된 기능, 포상실적 등	10점	평가위원이 채점
	수행 전략 및 추진 능력	심사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조직구성 등	10점	
	용역 수행계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등	15점	
	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방안의 충실도 및 이행가능성 등	15점	
	소계	5개 항목	50점 만점	
정량 항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10점	공사에서 확인
	실적	최근 3년 간 실적	10점	
	참여 인력 경력	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	10점	
	소계	3개 항목	30점 만점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가 매년 인증심사 위탁용역의 입찰공고 시 관보 등에 게재하는

13) 위 공사는 매년 대학 교수, 내부 직원 등 5~6명을 인증심사 위탁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

“인증심사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Ⅲ.(위탁심사 관련 업무범위 및 내용) 2.(제안서 안내 사항) 아.(제안서 기술 평가 절차)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제안서의 기술적인 측면을 상세히 평가하여 제안요청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부합 여부 판정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최근 3개년간(2014~2016년) ■■■■ 및 — — — — 등 2개 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검토한 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중 정량 항목(30점)의 경우에는 2개 업체 간의 점수 편차가 거의 없었고¹⁴⁾, 가격분야(20점)의 경우에도 그 편차가 거의 없었던¹⁵⁾ 것으로 분석되어, 인증심사 위탁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로의 선정가능 여부는 결국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채점을 하는 정성항목 (50점)에서 그 당락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공사는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인증심사 위탁용역의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할 때에는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충족의 적정 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면밀히 심사하여 평가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사는 [별표 2]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정성항목 평가 명세”와 같이 평가위원들이 2개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와는 별개로 굿스테이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의 용역 수행업체라는 등의 사유로 ■■■■¹⁶⁾에 일률적으로 정성항목점수를 높게 부여하고, 한옥스테이사업 및 코리아스테이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 — — —¹⁷⁾에 일률적으로 정성항목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안

14) 정량항목은 실적항목으로 ■■■■, — — — — 2개 업체 모두 만점(30점)에 가까운 29점대의 점수를 받음

15) 2개 업체는 가격점수에서 만점(20점)을 받거나 19점대의 점수를 받음

16) 2011년부터 계속하여 굿스테이사업의 인증심사 위탁용역 수행

17) ■ 한옥스테이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계속하여 — — — —가 용역 수행

■ 코리아스테이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계속하여 — — — —가 용역 수행

서 평가를 실시하여 그대로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 공사는 최근 3개년간(2014~2016년) 굿스테이사업은 ■■■■에, 한옥스테이사업 및 코리아스테이사업은 — — — — —에 각각 매년 사실상 수의계약(2016년 계약금액: 굿스테이 9,370만여 원, 한옥스테이 6,831만여 원, 코리아스테이 7,073만여 원)으로 고정·발주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관광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업추진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첫째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숙박시설을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하는 일이 없도록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숙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인증심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둘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심사 등을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셋째 앞으로 인증심사 위탁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기존 수행업체 여부 등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① 앞으로 인증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을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

하는 일이 없도록 ‘숙박환경개선 운영위원회’ 인증심의회 내실을 기하는 등 우수 숙박시설 인증심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제안서 평가 시 특정업체에 일률적으로 점수를 높게 부여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처럼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서 평가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④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수 숙박시설 중 인증기준을 위반한 숙박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심사 및 ‘숙박환경개선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우수 숙박시설 인증 부적정 명세

연번	숙박시설		인증시기 (신규/갱신)	기존 처리	정당 처리 시	
	업소명	대표자			위배 항목	인증 여부
1	■ ■ ■ ■ ■	目目目	2015년 갱신	인증	접객공간 개방항목	불인증
2	■ ■ ■ ■ ■	○○○	2015년 갱신			
3	□ □ □ □ □	○○○	2015년 갱신			
4	▲ ▲ ▲ ▲ ▲	⊙⊙⊙	2015년 갱신			
5	△ △ △ △ △	◎◎◎	2015년 갱신			
6	▶ ▶ ▶ ▶ ▶	● ● ●	2015년 갱신			
7	▷ ▷ ▷ ▷ ▷	● ○ ○	2015년 갱신			
8	▶ ▶ ▶ ▶ ▶	○ ○ ○	2015년 갱신			
9	▷ ▷ ▷ ▷ ▷	○ ○ ○	2015년 신규			
10	▼ ▼ ▼ ▼ ▼	○ ○ ○	2015년 신규			
11	▽ ▽ ▽ ▽ ▽	○ ○ ○	2015년 신규			
12	▼ ▼ ▼ ▼ ▼	○ ○ ○	2015년 신규			
13	▽ ▽ ▽ ▽ ▽	○ ○ ○	2015년 신규			
14	◀ ◀ ◀ ◀ ◀	○ ○ ○	2015년 신규			
15	◁ ▷ ▷ ▷ ▷ ▷	○ ○ ○	2015년 신규			
16	◀ ◀ ◀ ◀ ◀	○ ○ ○	2016년 갱신			
17	◁ ▷ ▷ ▷ ▷ ▷	○ ○ ○	2016년 갱신			
18	◀ ◀ ◀ ◀ ◀	○ ○ ○	2016년 갱신			
19	◁ ▷ ▷ ▷ ▷ ▷	○ ○ ○	2016년 갱신			
20	◆ ◆ ◆ ◆ ◆	○ ○ ○	2016년 갱신			
21	◇ ◇ ◇ ◇ ◇	○ ○ ○	2016년 갱신			
22	◆ ◆ ◆ ◆ ◆	○ ○ ○	2016년 갱신			
23	◎ ◎ ◎ ◎ ◎	○ ○ ○	2016년 신규			
24	◇ ◇ ◇ ◇ ◇	○ ○ ○	2016년 신규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정성항목 평가 명세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평가위원	■■■■ ■	----- --	평가위원	■■■■ ■	----- --	평가위원	■■■■ ■	----- --	
굿스테이 사업	▲▲▲	43점	27점	▣▣▣	47점	41점	▣▣▣	48점	43점	■■■■에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 부여
	▲▲▲	48점	41점	▣▣▣	46점	41점	▣▣▣	48점	43점	
	▣▣▣	48점	40점	▣▣▣	48점	42점	▲▲▲	45점	40점	
	▼▼▼	48점	39점	▼▼▼	48점	44점	▼▼▼	50점	44점	
	○○○	48점	46점	▣▣▣	48점	42점	■■■	45점	31점	
한옥 스테이 사업	▣▣▣	43점	47점	▣▣▣	43점	47점	▣▣▣	41점	46점	-----에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 부여
	▣▣▣	40점	45점	▣▣▣	43점	43점	▣▣▣	43점	48점	
	▣▣▣	41점	47점	▲▲▲	46점	49점	▣▣▣	43점	48점	
	▲▲▲	39점	47점	▼▼▼	41점	49점	▼▼▼	42점	50점	
	▣▣▣	39점	46점	▲▲▲	39점	47점	▲▲▲	42점	47점	
코리아 스테이 사업 ^{주)}	-	-	-	▲▲▲	44점	49점	▲▲▲	41점	46점	-----에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 부여
	-	-	-	▣▣▣	43점	46점	▣▣▣	43점	48점	
	-	-	-	▣▣▣	44점	46점	▣▣▣	43점	48점	
	-	-	-	▣▣▣	33점	46점	▣▣▣	42점	48점	
	-	-	-	▼▼▼	42점	48점	▼▼▼	41점	48점	

주: 2014년도 코리아스테이사업의 경우 2회 유찰로 -----와 수의계약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조성계획 변경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관광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관광공사
내 용

한국관광공사는 1978. 10. 5.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81. 4. 13. 법률 제 3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¹⁾) 제3조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원 3,562,000㎡에 중문관광단지를 조성·관리(사업기간: 1978~2018년)하면서 2010. 11. 1.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조성계획 상 숙박시설 용도로 승인된 토지(소재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2, 이하 “위 토지”라 한다) 29,850㎡를 미술관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이하 “서귀포시”라 한다)는 2010. 10. 18.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 조성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한 협의요청을 받은 데 대해 같은 해 10.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상 위 토지의 용도를 미술관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1)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폐지됨

1. 중문관광단지 내 개발사업 관리 관련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허가 또는 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중문관광단지 내 토지가 조성계획과 다른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토지의 용도를 조성계획과 다르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얻어 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공사(국민관광본부 ㄱㄱㄱㄱㄱ)의 중문관광단지 관리업무 담당자 ㄱㄱㄱㄱㄱ은 2016. 3. 4. 위 토지 소유자²⁾인 주식회사 ㄱㄱㄱㄱㄱ(대표이사: ㄴㄴㄴ, 이하 “위 업체”라 한다)가 조성계획상 미술관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위 토지 29,850㎡ 중 5,769㎡에 카트장³⁾을 설치하고 있는 등 조성계획과 다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공사중지 또는 원상회복을 요청하였다.

2)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진흥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1월 주식회사 ㄴㄴㄴㄴㄴ(대표이사 ㄹㄹㄹ)에 분양하였으나 동 업체의 부도로 2010년 5월 주식회사 ㄴㄴㄴㄴㄴ(대표이사 ㄴㄴㄴ)이 위 토지를 경매로 매입한 후 2014년 10월 대표이사를 ㄴㄴㄴ으로 변경하고, 2015년 10월 상호를 주식회사 ㄱㄱㄱㄱㄱ로 변경

3) 카트: 오락용 소형자동차

그 후 ■■■■■■■■■■은 2016. 3. 29. 위 업체로부터 위 토지에 카트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전해 들었으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아 카트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위 카트장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신청한 후 유원시설업 허가 부서에서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위 업체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업체가 2016. 3. 31. 서귀포시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조성계획 변경사항이라는 사유로 신청을 거부당하자 ■■■■■■■■■■은 같은 해 4. 20. 위 업체로부터 조성계획 변경서류⁴⁾를 제출받는 한편 같은 해 4. 26.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원시설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였다.

한편 위 업체는 2016. 4. 27. 서귀포시에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달라는 내용으로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등이 포함된 민원서류를 접수시킨 후⁵⁾ 위 공사가 당초 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신청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5. 1.부터 조성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카트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3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원상복구 명령 등

4) 한국관광공사는 위 업체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후 별도의 진입로와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받지 못함

5) 서귀포시는 2016. 5. 10. 위 토지가 조성계획상 휴양·문화시설(미술관)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민원회신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실시계획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하였는데도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 실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실시계획상 미술관 용도로 결정되어 있는 위 토지 5,769㎡에 “1항”과 같이 카트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등 실시계획과 다르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하여 2016. 5. 10.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원상복구를 명한 데 대해 원상복구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상 미술관 용도로 개발되어야 할 토지 5,769㎡가 적법한 절차 없이 카트장 용도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관광공사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조성계획과 다르게 중문관광단지가 개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 ① 앞으로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과 다르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중문관광단지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 국민관광본부 **+++++** 차장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관광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관광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 정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2014년 10월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Visit Medical Korea)¹⁾(이하 “의료관광 홈페이지”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²⁾하고 있다.

위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등(2016. 6. 30. 현재 353개 기관³⁾ 가입)으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게시한 후 기관별(의료기관 등)로 미니사이트(microsite)⁴⁾를 구성하여 기관소개, 진료과목, 가격정보 등 세부 정보를 자체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5년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보고서」(2015년 12월, 한국관광공사)⁵⁾에 따르면

-
- 1) www.visitmedicalkorea.com(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아랍어 홈페이지를 운영 중)
 - 2) 구축비: 1,170백만 원(2013년 81백만 원, 2014년 970백만 원, 2015년 119백만 원), 운영비: 1,241백만 원(2014년 513백만 원, 2015년 611백만 원, 2016년 117백만 원)
 - 3) 의료기관: 231개, 유치업체 등: 122개
 - 4) 의료관광 홈페이지 가입 후 별도로 개설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입기관별로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콘텐츠 메뉴 변경이 가능
 - 5) 의료관광시장 규모의 증가 및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 의료관광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데이터 축적, 중장기 의료관광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해 조사 실시(조사 기간: 2015. 11. 9.~12. 21.)

[표 1]과 같이 응답자의 47.1%가 의료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표 2]와 같이 응답자의 24.9%가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한국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습득 경로

(단위: %)

구분	주변사람 의견	인터넷 검색	여행업체	방송매체 광고·뉴스	인쇄매체 광고·기사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77.1	47.1	39.7	24.5	14.0	4.1	3.4
1순위	58.4	14.8	16.4	3.8	1.8	1.5	3.3

- 주: 1. 전체는 3개까지 중복응답 가능 조건으로 설문한 결과
 2. 1순위는 3개 중복응답 중 1순위 응답에 대한 설문 결과
 3. 표본수는 1,547명

자료: 「2015년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보고서」 재구성

[표 2]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단위: %)

구분	높은 비용	의료 연계 관광상품 부족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습득 불편	외국인 환자 전용 병실 부재/부족	예약 절차의 번거로움	통역/의사 소통 불편	기타
전체	50.1	26.1	24.9	21.9	20.5	20.5	34.0
1순위	28.0	11.4	5.9	11.6	10.1	11.6	21.4

- 주: 1. 전체는 3개까지 중복응답 가능 조건으로 설문한 결과
 2. 1순위는 3개 중복응답 중 1순위 응답에 대한 설문 결과
 3. 기타 의견으로는 사후관리 부족, 의료기관 시설 불편, 의료진의 불친절, 의료기술/전문성 부족
 4. 표본수는 1,056명

자료: 「2015년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보고서」 재구성

따라서 위 공사는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의료진, 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하고도 내실 있게 제공하여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의료기관 등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6. 6. 29. ~ 7. 15.) 중 영문 의료관광 홈페이지

이지 및 영문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18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미니사이트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23개 기관은 아예 미니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개설한 165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미니사이트의 경우 12개 분석대상 콘텐츠 메뉴 중 1개 메뉴(Who we are)에만 정보가 게시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메뉴(Medical Treatments, Medical Team 등)에는 정보가 게시되어 있지 않는 등 [표 3]과 같이 92개(55.7%) 의료기관의 미니사이트에는 12개 콘텐츠 메뉴 중 80% 이상이 관련 정보 없이 비어 있는 등 콘텐츠 정보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3] 콘텐츠 메뉴 정보 미게시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계	콘텐츠 메뉴 정보 미게시 비율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20% 미만
기관 수	165	92	10	26	19	18
비율	100	55.7	6.1	15.8	11.5	10.9
누적비율	-	55.7	61.8	77.6	89.1	100.0

- 주: 1.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의료관광 홈페이지 미니사이트 최초 가입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 메뉴 중 12개 메뉴(Who we are, Greetings, Medical Treatments, Medical Team, Contact Us, Price Information, Roadmap, Medical Performance, Case, Before and After, Notice, Publicity Material)를 대상으로 분석
 2. 기본 제공 콘텐츠 메뉴 중 의료기관이 제거한 메뉴 및 콘텐츠 메뉴 특성상 의료관광 홈페이지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FAQ, User Video 메뉴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3. 콘텐츠 메뉴 정보 미게시 비율: 정보가 전혀 없는 콘텐츠 메뉴 비율
 4. 콘텐츠 메뉴 정보 미게시 비율 산식: (미게시 콘텐츠 메뉴 수/사용 콘텐츠 메뉴 수)×100

자료: www.visitmedicalkorea.com 및 한국관광공사 자료 재구성

또한 콘텐츠 메뉴 등에 게시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영문이 아닌 한글 또는 기타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부정확하거나 부실하게 게시되어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의료관광 홈페이지 정보 부적정 사례

▶ 변경된 게시정보 미갱신 사례

- 『』』』』은 2015년 9월 주소를 이전였는데도 병원소개에 구 주소로 게시

▶ 영문이 아닌 기타 언어로 게시한 사례

- ㄱㄱㄱㄱㄱ(경기도 부천시 소재)은 병원명, 주소 및 병원소개를 영문 표기명이 아닌 러시아어로 게시
- ㄴㄴㄴㄴㄴ(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성명을 한글로 게시
- ㄷㄷㄷㄷㄷ(경기도 의왕시 소재)은 로드맵(Roadmap) 메뉴의 교통편에 대한 설명을 한글로 표기(예: 강남버스노선:441 오전육교 or 오전동주민센터 하차)
- ㅁㅁㅁㅁㅁ(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는 공지사항(Notice) 메뉴에 노동절 할인 행사 관련 게시물을 중국어로 게시

▶ 영문이 아닌 URL로 게시한 사례

- ㅂㅂㅂㅂㅂ(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은 병원명을 영문 표기명이 아닌 URL로 게시

▶ 글자 판독이 어려운 상태로 게시한 사례

- ㅅㅅㅅㅅㅅ(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은 로드맵(Roadmap) 메뉴의 약도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게시

그런데도 위 공사는 의료기관별 미니사이트 내 해당 정보는 가입기관이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사유로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후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의료기관 등에 콘텐츠 관련 정보 입력이나 수정 등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관광공사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콘텐츠 메뉴 중 부정확한 정보는 신속히 시정하고 정보가 적절히 게시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오류 정보 게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콘텐츠 메뉴 정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구축 후에도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확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 메뉴 정보를 보완하는 등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케이스타일 허브 구축사업 설계용역 변경계약업무 불철저

소 관 기 관 한국관광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관광공사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관광공사는 2015. 7. 28.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서울사옥¹⁾의 외관을 개선하는 사업²⁾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비: 220백만 원, 이하 “외관개선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 ■ ■ ■ ■ ■ ■ ■ ■ ■**(대표이사: **■ ■ ■ ■ ■**, 이하 “**■ ■ ■ ■ ■ ■ ■ ■ ■ ■**”이라 한다)가 이미 수행하고 있던 ‘케이스타일 허브 등 조성사업³⁾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일자: 2015. 5. 21., 용역비: 422백만 원, 이하 “케이스타일 허브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포함시키는 변경계약업무(총변경계약금액: 642백만 원)를 수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를

1) 위 공사가 본사를 원주시로 이전(2014. 12. 26.)할 때까지 본사로 활용하던 건물(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로서 2016. 7. 15. 현재 위 공사의 서울센터, 케이스타일 허브(K-style Hub·한식문화관 등 한류체험시설) 등으로 활용
2) 서울사옥을 문화·관광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건물 외벽의 미관을 개선하고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총사업비 52억 원)
3) 서울사옥을 리모델링하여 케이스타일 허브(2~6층) 등을 설치하는 사업(총사업비 146억 원)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케이스타일 허브 설계용역의 계약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일반조건」(2015. 1. 1. 기획재정부 예규 제218호) 제3조 및 제16조의 약정 등에 따르면 용역의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더라도 그 허용범위는 당초 계약의 목적 또는 본질을 바꿀 정도의 변경이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외관개선 설계용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7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별도 용역인 케이스타일 허브 설계용역에 포함시키는 변경계약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위 공사(관광산업본부 ☂☂☂☂☂ 🍷🍷🍷🍷🍷)의 케이스타일 허브 구축사업 추진업무의 담당자 \ \ \은 2015. 7. 28. 외관개선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기존에 수행 중인 케이스타일 허브 설계용역의 변경계약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으로 임의로 검토한 후 ‘케이스타일 허브 설계용역의 과업 내용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의 「공사 서울사옥 외관개선사업을 위한 설계 추진(안)」을 작성하였고, 팀장 ☀☀☀의 검토를 거쳐 부사장⁴⁾의 최종결재를 받아 계약부

4) 2015. 11. 19. 퇴사

서⁵⁾에 통보하였고, 계약부서는 같은 해 8. 20. 그대로 과 변경계약 [계약금액: 642백만 원(기존 422백만 원+외관개선 설계용역비 220백만 원)]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는 에 경쟁입찰 대상인 외관개선 설계용역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관광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히 숙지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 ① 앞으로 경쟁입찰 대상 용역을 기존에 시행 중인 다른 용역의 과업에 포함시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관광산업본부   대리 
" " " 팀장 

5)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신입사원 채용업무 불철저

소 관 기 관 한국관광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관광공사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관광공사는 2015. 10. 30. “2015년 신입사원 채용(안)”(이하 “채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표 1]과 같은 전형절차에 따라 5급 신입사원 35명(어권: 영어 22명, 중국어 6명, 일어 4명, 독어·불어·러시아어 각각 1명)을 선발¹⁾하였다.²⁾

[표 1] 5급 신입사원 전형절차

전형단계	평가방식	선발 인원
1차 (서류전형)	· 부적격자 외 필기시험 기회 부여 (단, 적정인원 초과 시 외국어 점수 순 선발)	2,500명(약 70배수)
2차 (NCS 직무능력검사)	· 필기시험 (관광상식 21문항 + 선택과목 49문항) · 인적성검사	175명(5배수)
3차 (실무면접)	· 일반면접(70%) · 외국어면접(30%)	70명(2배수)
4차 (임원면접)	· 임원면접(100%)	35명(1배수)

- 주: 1. 전형단계별 평가 점수가 다른 전형단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2차 전형단계 중 인적성검사는 인사 참고자료로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2. 2차 전형 중 선택과목은 경영학, 경제학, 법학, 회계학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임
4. 2차 및 3차 전형은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 추가 합격으로 합격 인원이 초과될 수 있고, 4차 전형은 동점자 발생 시 ① 3차 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 ② 2차 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순으로 합격 처리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1) 35명 중 1명은 입사 포기

2) 2차 전형은 일반 부문과 지역인재 부문에서 별도 경쟁하도록 하면서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부문에서는 어권별(영어, 중국어, 일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로 경쟁(지역인재 어권별 합격자 수를 고려하여 선발)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안 4. 전형절차에 따르면 2차(NCS 직무능력검사) 전형에서는 최종 선발 예정인원(35명)의 5배수를 합격으로 처리하되 과목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³⁾를 활용한 편차조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편차조정을 실시할 때에는 우선 평균 및 표준편차 산출을 위해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대로 응시자를 분류하여야 하고,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공통과목(관광상식) 점수를 필기시험 전체점수에서 제외한 후 선택과목 점수만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적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공사(경영본부 ㄹㄹㄹㄹㄹ ★★) 채용업무 담당자 ☆☆☆은 평균 및 표준편차 산출을 위해 응시자를 선택과목별로 분류하면서 2차 전형 시 경영학을 선택한 2명을 경제학 응시자로 임의 분류⁴⁾하였고, 관광상식 점수와 선택과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⁵⁾·적용함에 따라 편차조정이 잘못 실시되었다.

그리고 상급자인 차장 ○○○ 및 팀장 ΩΩΩ은 관광상식과 선택과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채용안 및 심의안에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1. 24.경

3) 표준편차는 여러 집단 간의 분포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변산도지수로 많이 활용되고, 원점수를 보다 비교가 가능한 표준점수화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사용되며, 각 점수와 산술평균과의 차, 즉 편차점수를 제공한 다음 모든 사례에 대하여 합한 것의 제곱근으로 구함(교육학용어사전)

4) 2015. 11. 2. (주)○○○○(대표이사 ㄱㄱㄱ)과 채용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체가 2015. 11. 24.경 위 2명을 경영학 응시자로 분류하여 위 공사 ★★ 채용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채용 담당자는 위 2명이 최초 서류 접수 시 경제학을 선택하였다는 사유로 인사업무 담당 차장 및 ★★장 등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경제학 응시자로 재분류한 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

5) 표준편차를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음(변량값 x, 평균값 m, 변량수 n)

$$\sqrt{\frac{(x_1 - m)^2 + (x_2 - m)^2 + \dots + (x_n - m)^2}{n}} = \sqrt{\frac{1}{n} \sum_{i=1}^n (x_i - m)^2}$$

채용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 관광상식 점수와 선택과목 점수를 구분하여 송부한 2차 전형 결과 등을 확인하였는데도 같은 해 11. 26. 채용업무 담당자 ☆☆☆이 이와 같이 잘못 처리한 결과를 같은 날 그대로 결재하였다.⁶⁾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6. 29.~7. 15.) 중 공통과목 점수를 필기시험 전체점수에서 제외하여 선택과목 점수만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재산출한 결과 [표 2]과 같이 나타났다.

[표 2] 평균 및 표준편차 현황

(단위: 점)

구분	전체		경영학		경제학		법학		회계학	
	평균	표준편차								
당초 (관광상식+선택과목)	32.18	8.79	32.41	7.91	32.38	9.76	25.89	8.51	39.98	9.64
정당 (선택과목)	22.80	7.65	23.00	6.57	23.07	8.84	16.55	7.35	30.67	8.49

주: 1. 소수점 3자리 이하 반올림
 2. 2차 전형 시 경영학을 선택한 2명을 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경제학 응시자로 분류한 것을 경영학 응시자로 정당하게 재분류한 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사례]

- ▶ 경영학 응시자 ㄱㄱㄱ(관광상식 16점 + 경영학 39점 = 총점 55점)의 경우
 - 관광상식 점수와 선택과목 점수를 분리한 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적용하는 것이 정당
 - 관광상식 16 + 정당 전체 평균 22.7997973 + {(경영학 점수 39 - 정당 경영학 평균 22.9959117) × 정당 전체 표준편차 7.64726681 ÷ 정당 경영학 표준편차 6.57096348} + 가산점 0.7 = 58.1253053
 - 그런데 관광상식 점수와 선택과목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적용
 - 당초 전체 평균 32.17638 + {(관광상식 16 + 경영학 점수 39 - 당초 경영학 평균 32.4136) × 당초 전체 표준편차 8.787918 ÷ 당초 경영학 표준편차 7.914095} + 가산점 0.7 = 57.95663

또한 이와 같이 재산출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선택과목에만 적용하여 응시자의 최종점수 및 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위 공사가 2015. 11. 26. 2차 전형 합격자를

6) 경영학 응시자 2명을 경제학 응시자로 분류한 것은 ☆☆☆이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었음

결정하면서 불합격으로 처리하여야 할 〇〇〇을 합격으로 처리하는 등 [별표] “필기시험 순위 변경과 그에 따른 최종합격자 변경 현황”과 같이 불합격 처리하여야 할 14명을 합격으로 처리하였고, 합격으로 처리하여야 할 ㉠㉡㉢ 등 3명을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면접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 12. 3. 3차 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위 [별표]에 기재된 사람들 중 2차 전형에서 이미 탈락되어야 할 〇〇〇과 ㉣㉤㉥을 합격으로 처리하였고, 이 중 〇〇〇은 같은 해 12. 10. 4차 전형에서 합격으로 처리된 후 같은 해 12. 18.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감사원 감사일 2016. 7. 15. 현재까지 위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관광공사는 경영학 응시자 2명을 경제학 응시자로 분류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응시자가 최초 원서 접수 시 경제학을 선택하였고, 실제로 경제학 시험지를 배포받은 점, 이들을 경영학 응시자로 분류할 경우 경영학 평균 및 표준편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용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경제학 응시자로 분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광상식 점수가 왜곡된 것에 관하여는 이견에 없으나 평균 및 표준편차 산출·적용에 대하여 2차 전형 당시 1교시에 70문항(관광상식 21문항, 선택과목 49문항)을 치르다보니 편차조정을 실시할 때 관광상식 점수와 선택과목 점수를 분할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응시자 분류와 관련하여 위 응시자 2명이 2차 전형 시 OMR 카드에 경영학을 선택하여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경영학 답안을 토대로 채점이 실시되어

해당 점수를 경제학으로 분류할 경우 경제학 평균 및 표준편차에 오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용 대행업체도 위 응시자 2명을 경영학 응시자로 분류하여 위 공사에 송부하였는데도 채용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경제학 응시자로 분류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평균 및 표준편차 산출·적용과 관련하여 위 공사가 2015. 10. 30. 작성한 채용안에는 관광상식과 선택과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 대행업체가 관광상식 점수와 선택과목 점수를 구분하여 2015. 11. 24.경 위 공사에 송부한 점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 ①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 관련 NCS 직무능력검사 합격자 결정 시 편차조정을 잘못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경영본부	♂♂♂♂♂	★★★	대리	☆☆☆
"	"	"	차장	○○○
"	"	"	팀장	ΩΩΩΩ

[별표]

필기시험 순위 변경과 그에 따른 최종합격자 변경 현황

(단위: 위)

순번	응시계열	성명	2차 전형 순위		2차 전형 결과		3차 합격여부	최종 합격여부
			당초	정당	당초	정당		
1	-	ㅇㅇㅇ	5	6	합격	불합격	○	○
2	-	ㅇㅇㅇ	46	55	합격	불합격	○	×
3		ㄱㄱㄱ	46	53	합격	불합격	×	-
4		ㄴㄴㄴ	46	51	합격	불합격	×	-
5		☑☑☑	46	51	합격	불합격	×	-
6		☒☒☒	46	53	합격	불합격	×	-
7		-	ㄷㄷㄷ	23	29	합격	불합격	×
8	▲▲▲		23	27	합격	불합격	×	-
9	◆◆◆		23	26	합격	불합격	×	-
10	-	☞☞☞	19	20	합격	불합격	×	-
11		☛☛☛	19	20	합격	불합격	×	-
12		ㄹㄹㄹ	19	23	합격	불합격	×	-
13		ㅍㅍㅍ	19	22	합격	불합격	×	-
14	-	ㄷㄷㄷ	70	77	합격	불합격	×	-
1	-	ㄱㄱㄱ	76	70	불합격	합격	-	-
2	-	ㄴㄴㄴ	52	45	불합격	합격	-	-
3	-	Z Z Z	6	5	불합격	합격	-	-

주: 1. 지역인재 응시자 2명 모두 영어를 선택하여 일반 부문의 어권별 합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2. 당초 합격자의 수가 정당 합격자의 수보다 많은 이유는 동점자 합격 처리에 따라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였기 때문
 자료: 한국관광공사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업무 불철저

소 관 기 관 한국관광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관광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관광공사는 2013. 9. 13. ▲▲▲▲▲(대표자 ○○○)와 “제16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및 전시회 행사대행”계약(계약금액 91,212천 원)을 체결하는 등 2건의 계약(총계약금액 161,212천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어떤 사업이 국가 등이 위탁¹⁾하는 사

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공사는 “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및 전시회 행사대행” 용역을 일반경쟁에 부치는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근거로 ▲▲▲▲▲▲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공사는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고 전시회 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유로 ▲▲▲▲▲▲와 “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및 전시회 행사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표]와 같이 경쟁입찰 대상 2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한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및 검토결과
1	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및 전시회 행사대행	▲▲▲▲▲▲	2013. 9. 13.	91,2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하는 사업으로 수의계약하였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뿐 국가사업의 위탁·대행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성과평가 지표개발 연구	▼▼▼▼▼	2014. 12. 22.	70,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하는 사업으로 수의계약하였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국가사업의 위탁·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그 결과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는 등 공정한 계약 및 거래질서가 훼손되었다.

1) 기획재정부는 2016. 7.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에는 조합의 업무 가능 범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뿐 국가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

관계기관 의견 한국관광공사는 위 지적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골프카 구매계약업무 불철저

소 관 기 관 한국관광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관광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관광공사는 〃〃〃〃〃 경기 업무를 위해 2013. 7. 4. 주식회사 우우우 우우(대표이사 〃〃〃)과 “〃〃〃〃〃 대여용 골프카 20대” 구매계약(계약금액 345,400,000원)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위 체결기준 제7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고, 위 체결기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조 등의 실적의 규모를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1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 대여용 골프카 20대를 구매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 규모와 같은 20대 이상의 골프카 납품실적이 있는 입찰참가업체의 납품이행능력을 동등한 평점인 만점(15점)으로 부여하여 평가하도록 「골프카 제안서 평가기준」²⁾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공사(㉸㉸㉸㉸㉸ ㉸㉸㉸㉸㉸)의 골프카 구매업무 담당자인 차장 ㉸ ㉸은 2013. 5. 13. 기술능력평가항목인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을 최근 3년간 3,000대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5점(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골프카 제안서 평가기준」을 기안하였다.

또한 같은 부서의 팀장 ㉸㉸㉸은 ㉸㉸㉸㉸㉸ 업무를 총괄하면서 「골프카 제

1) 기술능력평가는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개 항목에 80점, 입찰가격평가는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13. 11. 24. 조달청지침 제10315호)을 마련하여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재무상태 및 이행실적 평가에 대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이 100% 이상이면 만점을 주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안서 평가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013. 5. 13. 그대로 결재하는 등 제안서 평가기준을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맞지 않게 수립하였다.

그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㉜㉜㉜㉜㉜ 대여용 골프카 20대” 계약목적물 규모와 같은 20대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 납품이행능력 점수를 만점(15점)으로 부여하여 평가하였다면 [표]와 같이 당초 2순위에 해당하는 (㉜)(㉜)(㉜)(㉜)(㉜)(대표이사 (㉜)(㉜)(㉜))가 1순위가 되는 반면 당초 1순위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우우우우우는 2순위가 되는데도 2013. 7. 4. 주식회사 우우우우우과 “㉜㉜㉜㉜㉜ 대여용 골프카 20대” 구매계약(계약금액 345,400,000원)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㉜)(㉜)(㉜)(㉜)(㉜)가 제안한 입찰가격(286,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59,400,000원 만큼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골프카 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심사결과표

(단위: 점)

업체		주행성	안정성	납품이행 능력	신인도	기술평가 소계	가격 평가	합계	순위
(주)우우우우우	당초	22.20	18.80	15	17	73	16.46	89.46	1
	정당	22.20	18.80	15	17	73	16.46	89.46	2
(㉜)(㉜)(㉜)(㉜)(㉜)	당초	20.40	17.20	12	17	66.6	20	86.60	2
	정당	20.40	17.20	15	17	69.6	20	89.60	1
㉜㉜㉜㉜㉜	당초	20.60	17.00	10	14	61.6	19.70	81.30	3
	정당	20.60	17.00	15	14	66.6	19.70	86.30	3

주: 1. '20대 골프카 구매 시 최근 3년간 납품실적(3,000대 이상: 15점, 2,000~2,999대: 12점, 1,000~1,999대: 10점, 1,000대 미만: 5점)

2.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1배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재산정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관광공사는 감사결과에 수용하면서 향후 유사 업무 추진 시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① 앞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이행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물품구매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국민관광본부 ㄱㄱㄱㄱㄱ 차장 ㄹㄹㄹ

국민관광본부 ㄱㄱㄱㄱㄱ 팀장 *C*(현 ㉠㉠㉠㉠ ㉡㉡㉡㉡)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정부 경영평가 태스크포스 직원 대상 인센티브 등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관광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관광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정부 경영평가 태스크포스¹⁾를 조직하고 그 소속 직원에게 인센티브, 초과근무수당, 연수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2012~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 성과급은 정부 경영평가결과 및 내부평가결과에 따른 지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2012~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규정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 Task Force: 목적달성을 위한 일시적 조직

따라서 위 공사는 태스크포스 직원에게 보상 차원으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후 남은 성과급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성과급 예산을 성과급 지급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미 기본급으로 전환된 초과근무수당²⁾을 재차 지급하거나 내부규정에도 없는 연수비 명목의 휴가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공사는 태스크포스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장 결재를 근거로 2015년도의 경우 ☯☯☯☯☯ 2급 ~~☯☯☯~~ 등 태스크포스 직원 14명에게 인센티브(월봉의 50%) 26,103천 원, 연수비 명목의 휴가비³⁾ 26,810천 원을 지급하는 등 [별표] “인센티브 등 지급 현황”과 같이 최근 4년간(2012 ~ 2015년) 태스크포스 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예산 57,012천 원과 내부평가 성과급⁴⁾ 잔여예산 15,211천 원 등 계 72,223천 원을 태스크포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용도로 지급하였고, 광고선전비 예산 154,273천 원 중 45,000천 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109,273천 원을 연수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예산 등 226,496천 원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여 경영평가 태스크포스 직원 인센티브 등의 용도로 잘못 집행하였다.

2) 위 공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월 1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한 이후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3) 태스크포스 직원 14명 중 4명의 연수비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3명(~~☯☯☯~~, ☯☯☯, ☯☯☯)은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여 여행을 다녀왔고 1명(☯☯☯)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경비로 집행
 4) 2014년도에는 전년도에 대한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자 내부평가 성과급 잔여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

관계기관 의견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태스크포스 직원에게 인센티브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수는 폐지하는 등 정부지침과 내부규정 범위 내에서 보상방안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다르게 경영평가 태스크포스 직원에게 인센티브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수비 명목의 휴가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인센티브 등 지급 현황

(단위: 명, 천 원)

지급연도	지급 인원수	인센티브 지급액 (지급률)	초과근무수당 (1인 100만 원)	연수비 명목의 휴가비 (1인 200만 원)	계
계	59	72,223 (경영평가성과급 잔여예산: 57,012) (내부평가성과급 잔여예산: 15,211)	45,000	109,273	226,496
2015년	14	26,103 (월봉의 50%)	-	26,810	52,913 (1인당 3,779)
2014년	14	15,211 (월봉의 30%)	14,000	24,074	53,285 (1인 3,806)
2013년	16	16,730 (월봉의 30%)	16,000	31,379	64,109 (1인 4,006)
2012년	15	14,179 (월봉의 30%)	15,000	27,010	56,189 (1인 3,745)

주: 1. 2016년에는 태스크포스 직원 14명에게 인센티브(기본급의 50%)와 연수비 200만 원 한도로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2016. 7. 12. 현재 미집행

2. 2014년은 내부평가성과급 잔여예산에서 지급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불철저

소 관 기 관 한국관광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관광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관광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등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겸직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등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의 임직원은 임명권자나 제청권자 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부강의 등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공사업무 이외에 다른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에 종사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사장으로부터 겸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

시 및 대가를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임직원이 검직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6. 29.~7. 15.) 중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공사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검직승인 신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 5급 (((은 검직 승인을 받지 않고 해양수산부가 발주하여 ♀♀♀♀♀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토끝단 등대의 활용방안 및 영해기점의 암초 상 등대 설치 연구용역” 과제에 2013. 6. 13.부터 2014. 3. 9.까지 참여하여 6,659천 원을 받는가 하면, 우우우우우장 2급 ㅎㅎㅎㅎㅎ은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고 송송송송송의 회의에 3회(2013년 2~3월) 참석하고 1,400천 원을 받는 등 계 32건의 외부강의 등에 참여하여 계 13,749천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별표]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2013. 1. 1.~2015. 12. 31.)”과 같이 위 공사 직원 151명이 외부강의 등에 대한 검직 승인(1건¹⁾) 신청 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 428회(177,037천 원)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공사는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관광공사는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

1) 외외외외외 계약직 ㅎㅎㅎㅎㅎ의 경우 검직 승인을 받지 않고 재단법인 평평평평평으로부터 전문연구보고서 번역작업에 3차례(2014. 10. 6.~11. 6., 2015. 4. 26.~5. 26., 2015. 9. 29~10. 23.) 참여하여 계 16,089천 원의 번역비를 받음

지 않으면서 앞으로 임직원 전원에 대해 교육 등을 강화하고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 소속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직원 외부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에게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2013. 1. 1.~2015. 12. 31.)

(단위: 건, 명, 원)

외부강의 등 종류 및 건수		신고	미신고	미신고 세부내역	
				인원	대가
계	531	103	428	151(중복 제외)	177,037,516
강의, 강연	125	29	96	38	38,381,200
발표, 토론	48	11	37	27	10,972,000
심사, 평가, 자문, 의결	233	44	189	88	71,027,010
회의	74	15	59	30	14,818,000
기타	51	4	47	34	41,839,306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재구성